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2가단53227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16. 접수 제17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관련 등기부등본의 기재, 관련 가처분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C이 소유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8810분의 172483 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피고의 어머니)은 2004. 5. 17.경 4,000만 원을, D은 같은 날 3,500만 원을 각 월 이율 2%로 정하여 E(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하였고, C과 D은 이에 대한 담보로 강원 홍천군 F 지상 건물(이하 ‘강원도 건물’이라 한다) 중 자신들 명의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E에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4. 5. 18. 접수 제8561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는 2008. 9.경 C과 D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1312호)1), 위 법원은 2008. 11. 28. ‘C은 E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8.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E는 2014. 1. 12. 사망하였다. 당시 E의 배우자 G, 직계비속으로 원고와 H가 있었는데, G은 2018. 1. 23. 사망하였고, H도 2018. 11. 26.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E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라. C은 2020. 7.경 E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도 C을 상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대여금 지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7318(본소), 2020가단5309268(반소)]. 위 법원은 2022. 7. 22. C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C이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6826(본소), 2022나46833(반소)]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11. 28.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C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다315025), 2024. 3.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C은 관련사건의 1심 판결의 변론종결 무렵인 2022. 6. 15.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그 다음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174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의 C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이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3,700만 원 상당의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의 강원도 건물 중 1/3지분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이외에 체납한 추징금, 벌금, 지방세, 국세, 대여금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C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증여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어머니인 C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추정을 깨뜨리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윤

별지

1) E와 D 사이에는 2008. 11. 28. 'D이 E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